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성숙한 전력기술 문화 창달이 목적 —

김 기 욱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기술이사

## 1. 머리말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지도 어느덧 한세기를 넘기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전기기술자의 역사가 100년이 지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자격제도에 전기기술자 제도가 그 근원이 되었음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기술자 단체인 우리 협회의 역사도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뒤지지 않는으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원만하지 못한 단체는 어느 곳이나 그러하듯 우리 전력기술인도 국가사회 및 국민경제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 크지만, 단체의 큰 발전은 이루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면면이 이어오는 동안 협회는 단체의 성격과 전통은 지켜왔으며 오늘에 이르러 이제 재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우리 협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 2. 연혁 및 설립배경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전기주임기술자의 친목과 권익향상을 위해 250여명의 전기주임기술자 자격소지자에 의해 1963년 12월 14일에 창립된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그 뿌리로 하고 있다.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는 1964년 8월 21일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상공부의 위임에 의하여 전기주임기술자의 실무수습 등의 교육을 집행하는 등 전력기술인 단체의 체계와 전력기술인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협회 초창기 기반을 정착시켜 왔다.

1975년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에 따라 전기주임기술자라는 명칭이 전기기사로 개칭됨에 따라 1975년 4월 18일 협회를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던 중 정부의 유사협·단체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1980년 9월 6일 「대한전기협회」에 흡수·통합되어 기사운영위원회로 활동



을 조직의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와 20개 지부로 되어 있다.

협회는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와 대한전기기사협회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던 자와 설계·시공·감리 및 전기안전관리 등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 학·경력자 등 50만 모든 전력기술인을 회원의 대상으로 하며, 1997년 5월 10일 현재 3만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협회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20개 지부와 집행사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총회는 협회 임원 및 지부장과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되는 20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사무기구는 비상근 회장을 중심으로 상임감사, 관리이사, 기술이사 등의 상근임원과 4실 12과와 감사과 및 20개 지부 사무국 등의 부서에 100여명의 직원과 상근연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조직표는 별표와 같다.

한편 협회의 현 임원진을 살펴보면, 권용득 회장(명신종합전설(주) 대표이사), 장운경, 강명식 부회장이 있으며, 이사로는 이영수(통상산업부 수화력발전과장), 국상훈(조선대 명예교수), 장하린(금호전력(주) 회장), 류재관(동서증권(주)시설관리팀장), 현홍기(한국전기관리(주)고문), 천봉쌍(건울산전 대표), 안용승(안일농산 대표), 김영문(삼성물산(주)고문), 김인석(삼화기연(주)대표이사), 유석구(한양대 교수), 오재현(협회 관리이사), 김기욱(협회 기술이사), 감사 오제균(선진전설(주)부사장), 장수덕(협회 상임감사) 등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12인 및 감사 2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협회는 회원의 참여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원운동체(단체)이기 때문에 총회와 이사회를 비롯하여 분야별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인사

위원회, 법·제도위원회, 기술개발위원회, 전기안전관리대행위원회, 기술안전위원회, 공사·설계·감리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공제위원회, 회관건립위원회 등 정관 및 위원회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교육개발전문위원, 출판전문위원, 사고조사전문위원, 기술지도전문위원등 비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협회 업무와 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회원의 규모에 따라 1급, 2급, 3급 지부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의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지부의 조직은 소속회원으로 구성하는 지부총회와 지부장, 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별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업무별·지역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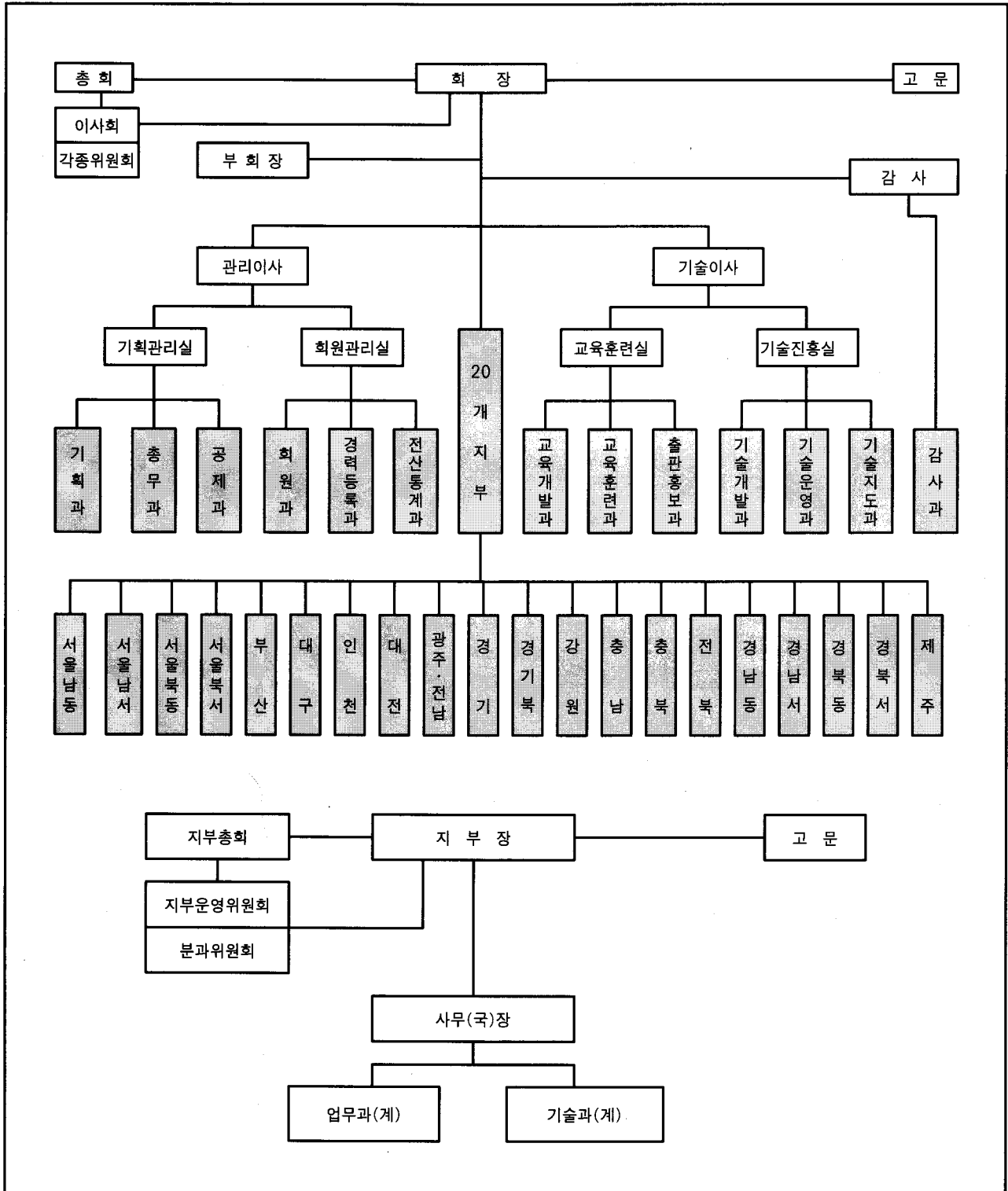
더불어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회 현안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회의는 협회 회장이 주재한다.

## 나. 회원 가입대상 및 회원의 종류

### (1) 회원가입대상

- ①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
- ②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및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③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자와 그 업체에 소속된 감리원
- ④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자격 취득자
- ⑥ 위 ①~⑥ 이외의 전력기술인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
- ⑦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업체 및 단체

## 기구 표



(2) 회원의 종류

- ① 직무회원 : 위(1)의 대상 중 ①,②,③ 및 ④에 해당하는 회원
- ② 일반회원 : 위(1)의 대상 중 ⑤에 해당하는 회원
- ③ 준회원 : 위(1)의 대상 중 ⑥에 해당하는 회원
- ④ 특별회원 : 위(1)의 대상 중 ⑦에 해당하는 회원

## 4. 협회 주요사업 및 부서별 업무

### 가. 협회 주요사업(전력기술관리법 제19조 및 협회정관 제4조)

- (1)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 (2) 전력기술인·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3)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출판 및 홍보
- (4) 전력시설물의 진단·기술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
- (5)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 운영
- (6)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해임 신고 업무
- (7) 회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
- (8) 회원 관리 및 전력기술인의 권익증진 및 옹호를 위한 사업
- (9)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5. 향후 계획

### 가. 전력기술 개발 및 관리

(1) 전력기술이 타 기술분야에 비하여 기술적인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력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개발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신기술개발자를 우대하고 신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

여 노력할 것이다.

(2) 전력기술 및 전력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이 아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영역별로 구분된 전력기술기준, 즉, 전력시설물 설계기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기준, 전력시설물 시공기준·검사기준 및 전력시설물 유지운영기준 등의 제정 연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는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운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 나. 전력기술인관리

국가 산업 기술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기술분야의 설계·시공·감리·유지운영·보수 및 행정과 유관업무 등에 종사하는 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력기술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 종사자만이라도 향후 2년내에 경력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협회는 등록·신고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퇴사·기술자격 취득사항 등의 경력이 전문 업무영역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하고, 전산장비를 확충하며, 아울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분야별 전력기술인의 수급동향 등 기술인력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고등학교 이상의 전기과를 졸업한 모든 전력기술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하여 나아갈 것이다.

### 다. 전력기술인 교육훈련

(1) 전력기술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내실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회 전력기술교육원을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며,

(2)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인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전력기술인교육훈련 및 감리원교육훈련 등을 더욱 가치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저렴한

